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000,739,642	210,022,189
일반회계	6,296,212,429	188,886,373
특별회계	704,527,213	21,135,816
기타특별회계	704,527,213	21,135,816
소방특별회계	303,638,009	9,109,14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45,477,982	10,364,339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1,507,432	345,223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272,977	98,189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532,758	45,983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37,389,209	1,121,676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708,846	51,26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5,307,69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79,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